

IV. 태 국

1. 관련 법 및 규정

- 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법 BE.2522(1979)와 Ministry of Public Health에 서 규정한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허가와 함께 규격화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태국 국내법에 규정 되어 있고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식품에 한해서 식품 등록을 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
- 육류, 과일류 및 채소와 같이 중요한 식품에 대하여 일부 농산물 관리청
 과 협력 관리 기관에서 수입허가와 함께 열처리와 위생처리 증명을 요구
 하고 있으며 또한 23개 품목의 농산품들은 태국 통상부의 관세할당 시스
 템(tariff-rate-quota system) 관리품목임

2. 식품분류

태국의 식품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뉨

가. 구체적인 관리 식품(Specifically-controlled food)

- 이 식품 등록이 필수이며 품질 규격, 세부항목, 포장 그리고 라벨링 필수요소
 등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음. 현재까지 14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음
 -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follow-up formula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Infant food and follow-up formula food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 Supplementary foods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 · Sodium Cyclamate and food containing Sodium Cyclate
 - Food additives
 - Weight-control foods

- Stevioside and food containing Stevioside
- Beverages in sealed containers
- Foods in sealed containers
- Flavored milk
- Yogurt milk
- Cow's milk
- Other milk products
- Ice cream

나. 규격화된 식품(Standardized food)

 법규정에 의해 제품의 표준이 정해지는데, 규격화된 식품으로 분류하는 목적은 소규모의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되는 식품을 관리함으로써 식품 생 산자를 돕고 제품 위생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임. 규격화된 식품의 경우, 제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제품의 특성과 라벨은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함. 32가지 타입의 식 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음

Electrolyte drinks	Tea	
Herbal tea	Coffee	
Soybean milk in sealed container	Ice	
Drinking water in sealed container	Natural mineral water	
Peanut oil	Coconut oil	
Palm oil	Fat and oil	
Butter oil	Butter	
Cheese	Margarine	
Ghee	Iodized table salt	
Vitamin fortified rice	Alkaline-preserved eggs	
Cream	Chocolate	

Some types of sauces	Vinegar		
Fish sauce	Honey		
Food seasonings derived from the	Jam, jelly, and marmalade in sealed		
hydrolysis or fermentation of soybean	containers		
protein			
Food supplement	Royal jelly and royal jelly products		
Semi-processed food			

다. 표준 라벨이 요구되는 식품

- 위의 두 가지 분류보다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지는 않음. 구매자의 건강 에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식품이 이에 해당되며, 12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음
 - Special purpose foods
 - Irradiated foods
 - · General food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
 - Processed gelatin and jelly
 - Chewing gum and candy
 - Bread
 - Sauces in sealed containers
 - Brine for cooking
 - Brown rice flour
 - Meat products
 - Flavoring agent
 - · Ready-to-cook and ready-to-eat foods

< 육류제품 라벨링 (Meat products) >



라. 일반적인 식품

○ 날 것 또는 조리된 식품, 보존 가공된 식품 또는 보전 가공되지 않은 식 품,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식품, 위의 3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일 반적인 식품이 해당됨. 식품등록은 요구되지 않으나 위생상태, 안전성, 라 벨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감독 및 관리됨

 이 위의 목록에 있는 식품들은 태국 정부 고시에서 Ministry of Public Health에 의해 공시된 표준 요구사항들을 따르게 되며, 또한 다른 정부 고시들이 식품과 관련이 있는 품목들도 관리하고 있음

3. 금지된 식품과 재료

가. 금지된 식품과 재료

- □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된 재료
 - 둘신(Dulcin, 무색 결정의 인공감미료 : 설탕보다 250배의 단맛을 낸다.),
 싸이클라민산(cyclamic acid)과 그 성분의 소금, AF-2(푸릴푸라미드,
 Furylfuramide), 브롬산칼륨(potassium bromate), 다미노자이드
 (Daminozide, 알라(Alar) 농약성분의 하나)를 포함한 식품 (숙신산
 2(Succinic acid 2), 2-디메틸 하이드라지드(2-dimethyl hydrazide)
 - 수출 제외 : 시클라멘산나트륨(sodium cyclamate, 백색의 무취, 투명결정
 체 : 설탕보다 약 30배가 달다.) 스테비아(stevia, 설탕 대체제 천연감미료)
- □ 제조,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 식품
 옥수수와 Cry 9C DNA 배열을 가진 옥수수 제품들

나.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식품

- □ 신고 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 □ 아래와 같은 나라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 크,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페인, 체코, 그리스, 일본, 슬로 바키아, 호주, 핀란드, 이스라엘, 폴란드, 캐나다, 미국)
- □ 우유와 우유 제품, 가죽, 스킨, 젤라틴과 가죽, 스킨 그리고 뼈로부터 가공

IV. 태 국

된 콜라겐, 단백질이 없는 지방조직, 인산화칼륨,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 30개월 미만의 소를 이용한 제품, 피와 피로 만든 제품

4. 라벨링 표기사항

가. 표준라벨

- 구체적으로 관리되는 식품, 규격 식품 및 라벨 부착이 필수로 분류된 수
 입 식품 또는 국내 식품은 표준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태국 라벨은 수입되어 반입되기 전과 소매상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착돼 있어야 함. 반입 이전에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태국 FDA에 의해 압수되며 또한 미국 표준 라벨만 부착된 제품은 수입되어 태국에서 판매 할 수 없음
- 스틱 라벨은 태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승인된 라벨과
 식품 포장 크기는 단일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함

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은 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를 사용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그러나 FDA로부터 생략을 허 가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식품명
- 식품의 시리얼 번호
- 생산자 이름과 주소, 생산지
- 식품의 정량
- 가루, 건조, 고체제품 실중량 표시
- 용액 제품 실용량 표시
- 반고체, 반용액 제품 실중량 또는 실용량 표시 가능
- 그 이외의 식품들은 실중량을 표시

봉인된 용기에 있는 식품은 실내용물을 표시하며 용액부분을 제외한 고형량 를 표시함. 그러나 식재료에서 용액부분만 나눌 수 없는 제품은 제외됨. 기본 적으로 내용물의 리스트는 전체 퍼센트로 나타내며 주요 내용물부터 시작함. 농축된 제품 또는 사용전 희석 또는 용해가 필요한 제품들은 희석 또는 용해 시 제품의 비율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은 "방부제 사용"을 표시
- 필요에 따라 "자연 시색소 첨가" 또는 "화학적 색소 첨가"를 표시
- 필요에 따라 "자연 조미료 첨가" 또는 "인공 조미료 첨가"를 표시
- 필요에 따라 "인공 감미료 첨가"를 표시
- 필요에 따라 "자연향 증가" 또는 "인공향 증가"를 표시
- 필요에 따라 제품 보관 방법을 표기
- 필요에 따라 제품 조합법을 표기
- 식품 사용 전 경고가 필요한 제품은 특정내용을 정확하게 표기
 (예: "유아식으로 사용 금지", "유아를 위해 우유 대신 사용 금지" 등으로 표기)
- 특정 소비자 집단을 위한 사용방법과 그 이외 유용한 정보를 표기
 (예 : 유아를 위한 급식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 라벨에 포함된 보고서, 그림, 사진, 부호, 상표들이 제품에 대하여 오해를
 야기시키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기되어서는 안됨
- 다른 제품의 광고를 포함하거나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그림, 사진,
 부호, 상표 등이 라벨에 표기되어서는 안됨

제조년월일, 제품만료년월일, 최적 상태의 제품의 품질보증 년월일을 표시함. "제조", "만료", "사용전"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참고함

- 제조년 월 일, 제품만료 년 월 일 또는 90일 이내 보존 가능한 제품의 품질 최적상태 또는 품질보증 년 월 일
- 제조년월일, 제품만료 년 월 일 또는 90일 이상 보존 가능한 제품의 품 질 최적상태 또는 품질보증 년 월 일
- FDA에 의해 지정된 특정 제품의 제품만료 년 월 일
 (예: 변형된 유아용 우유, 유아용 식품,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보충식품)

FDA에 의해 식품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명되지 않은 식품종류의 제품만 료 (년월일)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위의 내용 중 (a)와 (b)에 해당되는 제

품의 정보는 "중요 표시판" 위에 나타내야 하며 용기의 맨 위 또는 맨 아래 에 위치하도록 해야함

다. 식품생산자에게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의 라벨

영어 라벨이 허용된 제품이외의 모든 제품은 태국어 라벨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bigcirc	식품의 종류와 품명
\bigcirc	식품의 시리얼 번호
\bigcirc	미터법에 맞는 정량표기
\bigcirc	생산자명과 생산지

태국어로 표기되지 않아도 되는 수입제품이라고 하여도 FDA의 등록번호 또 는 라벨 승인 번호는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라. 가공식품을 위한 라벨

- 2009년 8월 30일 태국 FDA는 식품 라벨링 필요조건의 측정과 스낵 식품 에서 사용되는 신호 등 라벨링 로고 필수조건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가 공식품의 보존유지 필수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록 을 공시하였음
- 태국 FDA는 스낵식품에 관련된 문제들은 보건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야 할 것을 제의하였음. 또한 식품 라벨링의 경고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적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시다." 이는 운동의 중요성에 대 한 소비자 인식을 고취시키고 일정한 식품의 소비제한을 통하여 비만문제 를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아래 목록의 가공식품은 새로운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는 대상임

○ 감자칩
 ○ 옥수수 칩
 ○ 압출 스낵 식품
 ○ 비스킷/크래커
 ○ 여러 가지 와플

< 감자칩 >



< 옥수수 칩 >



< 비스킷/크래커 >



마. 유아를 위한 변형 우유 제품을 위한 라벨

- 모유의 중요성과 유소아를 위한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태 국 FDA는 "변형된 유아용 우유와 일정한 공법으로 변형된 유아와 아이 를 위한 우유"에 관련된 보건부 공시 No. 156 of B.E. 2537 (1994)를 변경 하였음
- 라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 모유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진 유아를 위한 최고의 식품이다.
 ○ 유아를 위한 변형된 우유는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에 의해 추천된 것이어야 한다.
 ○ 정확하지 않은 조제와 혼합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

- 이 위의 3가지 내용은 가로로 바탕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표기해야 하며 첫 번째 내용은 읽기 쉽게 굵은 글자로 표기해야 함
- 이미 등록된 3가지 종류의 변형된 우유 제품과 유소아를 위해 일정한 공 법으로 변형된 우유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180일 이내 수정한 라벨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부착된 라벨은 최장 1년까지만 유효하게 됨

바. 영양 정보 라벨링 (nutrition labeling)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식품은 의무적으로 영양분 라벨을 부착하여야함

\bigcirc	특정한 영양분이 요구되는 식품
\bigcirc	영업촉진을 위한 영양적 가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bigcirc	FDA에 의해 지정된 식품

- 영양분 라벨링 규정에서 제외된 식품은 유아용 식품과 유소아를 위한 보 충식품임. 그리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커다란 용기에 담겨 판 매되는 식품과 재포장 목적으로 작은 용기에 담긴 식품들도 영양분 라벨 링 규정에서 제외됨
- 영양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 사용은 선택적임
- 라벨의 간격은 정해져 있으며 수직 또는 수평에 기반을 둔 다른 모양의
 라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영양성분에 대한 기본 라벨 형식이 있음

< 요거트 >



사. 영양 주장(Nutritional Claims)

- 영양 주장의 의미는 식품이 가진 특정한 영양분의 상태, 제안, 또는 내포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 단계, 단백질, 지방, 탄수 화물 함유량 및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 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함. 영양 주 장은 영양성분 주장, 상대적인 주장 그리고 영양성분 기능 주장으로 구성 되어 있음
- 태국 FDA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음. 영양 성분의 주장을 서술하고 (예 : low in cholesterol) 영양 성분의 양을 비교(예: "less", "reduced") 하는 데 쓰이는 정의를 미국의 기준에 많이 따르고 있지만 "good source of", "rich in" 등 조금은 다른 표현도 함께 쓰이고 있음. 그리고 영양성분 크기, 참고량, 나라별 일일섭취량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 여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1) 영양성분 주장

a	Nut	rition Facts	
ServingSize:			
Servings Per Container	6i		
Amount Per Serving Total Caloriesk	cal (Calories from	n Fat kcal)	
		% Recommended Daily	y Infakes *
Total Fat	g	%	
Saturated Fat	g	%	
Cholesterol	mg	%	
Protein	g	%	
Total Carbohydrate	g	%	
Dietary Fiber	g	%	
Sugars	g	%	
Sodium	mg	%	
	% Recomme	nded Daily Intakes *	
Vitamin A		% Vitamin Bl	
Vitamin B2		% Calcium	
Ітон			
and upwards.	ls may differ. Ba	e based on a 2,000 k cal diet sed on a 2,000 k cal daily die	
	WS.		
intakes shall be as follo		Less than 65 g	
intakes shall be as follo Total Fat Saturated Fat		Less than 20 g	
intakes shall be as follo Total Fat Saturated Fat		Less than 20 g Less than 300 mg	
intakes shall be as follo Total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Less than 20 g	
intakes shall be as follo Total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Less than 20 g Less than 300 mg	
intakes shall be as follo Total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Total Carbohydrate		Less than 20 g Less than 300 mg 300 g	
intakes shall be as follo Total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Total C arbohydrate Dietary Fiber		Less than 20 g Less than 300 mg 300 g 25 g	

- 영양성분 주장은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수준을 표기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칼슘의 원료", "저지방 고섬유질"로 표기할 수 있음
- 식품 본연의 성질을 잃거나 영양성분이 전혀 없는 식품이 "free" 또는 "low"라는 용어를 식품명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영양요구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든 식품 종류에 해당됨(예 : 식물성 기름, free 콜레스트롤 식품) 한편 가공, 변환, 일정한 공법 또는 재공법을 이용해서 식품에서 영양 분을 제거 또는 영양분의 양을 낮추는 행위는 영양분 청구에 의해서 규제됨

2) 상대적인 주장

- 상대적인 주장은 2가지 이상의 식품 에너지 또는 영양성분 기준을 비교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less than", "fewer", "more than", "reduced", "lite/light"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함
- 하지만 이미 "low" 또는 "very low"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분 성분 또는 에너지 값을 표시한 경우 상대적 주장이 허용되지 않음

3) 영양분 기능 청구

- 영양분 기능 청구란 인체에 미치는 영양성분과 관계가 있음. 예를 들어
 "칼슘은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 성분은 적혈
 구 조성의 요소이다."라고 표기하는 것임
- 영양분 기능 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표기되도록 허가되었으며 모든
 조항은 FDA로부터 승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태국 RDI에 등재된 필수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의 대상이 된다.
- 식품의 주요 재료가 되는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청구를 표기해야 한다.
- 특별한 식품 성분이 아니더라도 영양성분 청구를 만드는 데 참조되어야 한다.
- 영양성분청구는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영양성분 주장은 질병 치료 또는 회복 및 질병 치료와 치유에 효과적인
 성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내포해서는 안 됨

4)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링 (GMO labeling)

- 태국 정보는 상업적으로 유전자 변형 씨앗 심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 가공업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의 수입을 허 용하고 있음
- 라벨링 법에 의해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식자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
 며, 아래와 같은 식품들이 라벨링법에 관리되는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 콩
- 조리된 콩
- 구운 콩
- 병 또는 캔에 든 콩과 레토르트 파우치에 든 콩
- 낫도 (fermented soybean)
- 미소 (Miso)
- 두부 또는 튀긴 두부
- 냉동 두부, 콩 글루텐

- 두유
- 콩가루
- 조리된 콩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콩 단백질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푸른콩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콩새싹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옥수수
- 팝콘
- 냉동 또는 냉장한 옥수수
- 병 또는 캔에 든 옥수수와 레토르트 파우치에 든 옥수수
- 옥수수 밀가루 또는 옥수수 전분
-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스낵
- 옥수수를 튀겨서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굵게 간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두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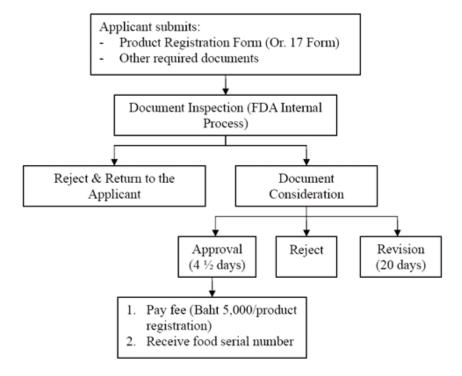
< 쌀 >



- 가공식품을 위한 법규항에는 1가지 이상의 원료를 사용한 식품들이 해당
 됨. 라벨링에는 주요 3가지 원료를 무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
 의 원료들이 최종 식품의 5% 이상 구성되고 유전자 변형 원료들에서 추
 출한 원료들이 5% 이상 된 식품들은 라벨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식품의 라벨링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식품은 태국 정부에 의해 압수되며 태국정부 조사관에 의해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식품으로 판명 되면 생산자와 수입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

< 참 고 >

□ 라벨링 숭인절차



□ 라벨링 사례



